

■ 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3. 9. 19.>

교사시설의 구분(제4조제1항 관련)

교사시설	구분			
교육기본시설	강의실·실험실습실·도서관·체육관·교수연구실·행정실·학생회관·대학본부·정보전산원·산학협력단·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			
지원시설	강당·실습공장·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			
연구시설	연구용 실험실·대학원 연구실·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			
부속시설	공통		교육기본시설,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에 부속한 일체의 시설로서 박물관, 교수·직원·대학원생·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, 공관, 연수원, 부속학교 등	
	농학계열	농학에 관한 학과등	농장·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	
		축산학에 관한 학과등	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	
		임학에 관한 학과등	학술림·임산가공장	
	공학계열	공학에 관한 학과등	공장	
		항공학에 관한 학과등	항공기·격납고	
	수산·해양계열	어로학·항해학에 관한 학과등	실습선	
		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등	수산가공장	
		증식학에 관한 학과등	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	
		기관학에 관한 학과등	기관공장	
	약학계열	약학에 관한 학과등	약초원·실습약국	
		제약학에 관한 학과등	제약실습공장	
	의학계열	의학·한의학·치의학에 관한 학과등	부속병원	
		수의학에 관한 학과등	동물병원	
	비고: 대학 또는 학과, 학부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			

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